

(재)김해시복지재단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2019. 8. 12.
전부개정 2024. 2.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여성폭력·스토킹(이하 “성범죄 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와 소속 구성원(대표이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재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목격자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 및 “여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제4조(대표이사의 책무) ① 대표이사는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범죄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5.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근절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거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고충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재단의 구성원(행위자를 포함)은 직장 내 성범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처리 신청을 철회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 등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 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행위자를 용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 및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2장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대표이사는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 및 관련 고충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 부서에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표이사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범죄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인사·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1.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자
2. 인사·복무 담당자
3. 김해시복지재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임직원
4. 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관련 외부 전문가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접수
2.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의뢰 및 처리
3.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제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고충처리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① 대표이사는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사이버신고센터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대표이사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대표이사는 매년 연초 여성가족부의 해당 연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4. 성범죄 등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범죄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임직원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년에 1회 간부(부서장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범죄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교육결과(일시, 장소, 교육방법,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 사진, 강사 프로필 등)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정보통신망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장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등

제11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사이버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통보 및 신고의무) 대표이사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3조(조사) ①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 상담원은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고 감사

담당 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조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피해 고충사건 조사가 접수됐을 경우,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범죄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⑤ 감사 담당 부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⑥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 조사과정에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사건 조사의 중지를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하는 경우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해당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의 이관) ① 감사 담당 부서는 조사과정에서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의 행위자(피신청인)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급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김해시 등)으로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위자(피신청인)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급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여야 한다.

②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더라도 대표이사 와 상급자 및 구성원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피해자 보호 및 고충심의위원회 등

제16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대표이사(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기간 동안 피

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스토킹 사건의 경우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조사 과정에서의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및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대표이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고충상담원 등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로 인한 고충과 관계

된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사건의 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의 처리와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영지원본부장이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당연직 위원: 인사·복무·감사·성희롱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1인

나.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은 반드시 위원회를 경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속한 사건 처리 등 긴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제16조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8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의 피해자, 행위자 등 사건 당사자(이하 “사건 당사자”라 한다)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의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또는 특정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의결하거나, 위원장의 권한으로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회피 신청을 한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범죄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 등 결과 통지) 대표이사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없이 서면,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

제20조(징계) ① 대표이사는 성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

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대표이사는 성범죄 등 및 2차 가해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가 신청한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대표이사는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예방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범죄 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범죄 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성범죄 등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성범죄 등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최근 1년간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⑦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조사 신청서(제13조 제1항 관련)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체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범죄 등의 중지 [] 2.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 첨부: 관련자료

상기의 사건처리를 위한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복지재단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사건 조사 이관(중지) 신청서(제13조 제7항 관련)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고충사건 조사 이관(중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20 년 월 일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조사(접수번호○○○호)의 이관(또는 중지) 사유:				
요구 사항	1.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 2.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중지() 3. 기타()				

위와 같이 성범죄 등 및 2차 피해로 인한 고충 사건 조사의 이관(또는 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복지재단 귀중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조사 결과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